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고 계십니까?
무역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Contents

- 불공정무역행위란? _01
- 무역위원회는 _02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_03
- 조사절차 및 제재조치 _05
- 조사제도의 강점 _07
- 대표 구제사례 _09
- 조사신청 안내 _11
- 신고센터 연락처 _12

Korea Trade Commission

불공정무역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는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해

안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밖으로는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로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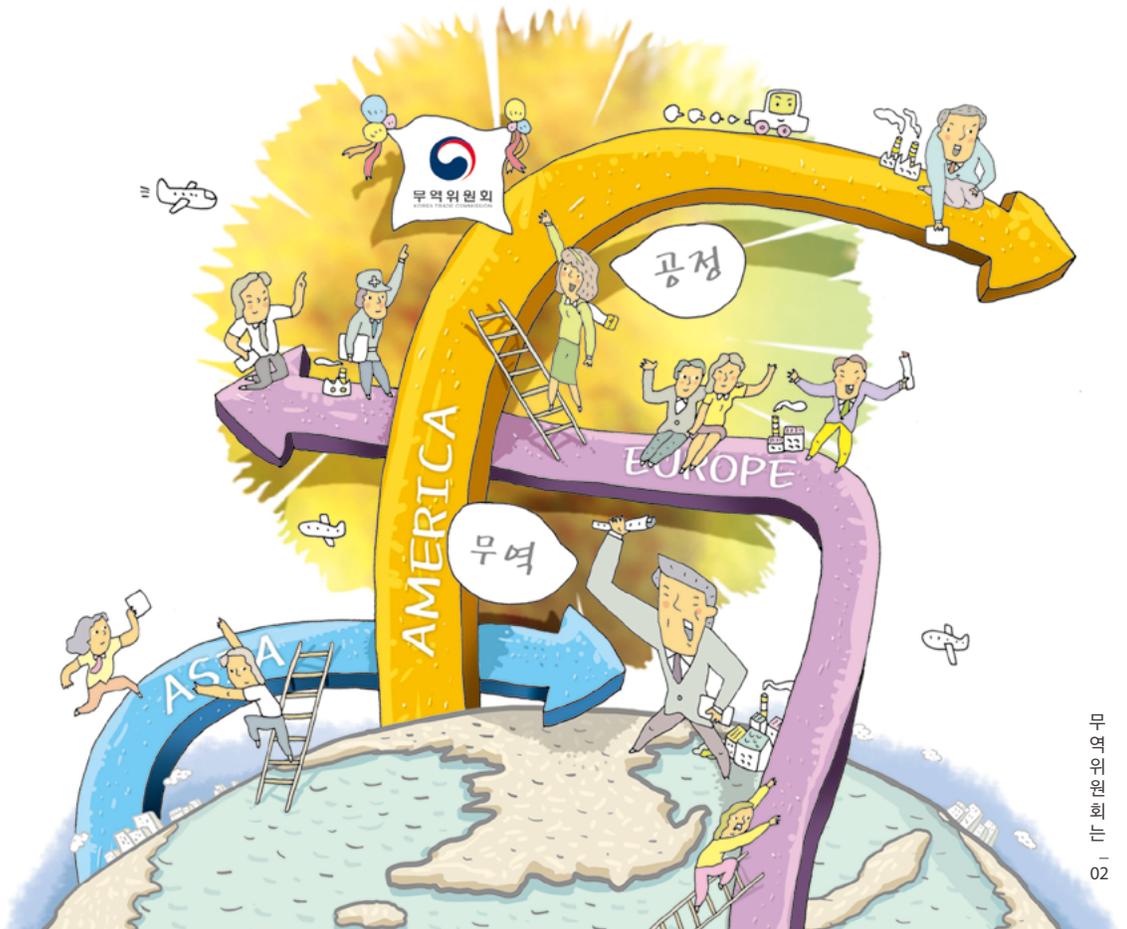
*관련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법에 의한 **공정한 조사·판정**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업체를 제재**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첫째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보호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
둘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위반 유형: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또는 변경, 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미표시 등

셋째



용량 과장표시 물품 수출입

품질 등 허위·과장표시*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원재료·성분, 품질·성능·효능, 규격·용량, 제조방법, 용기·포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넷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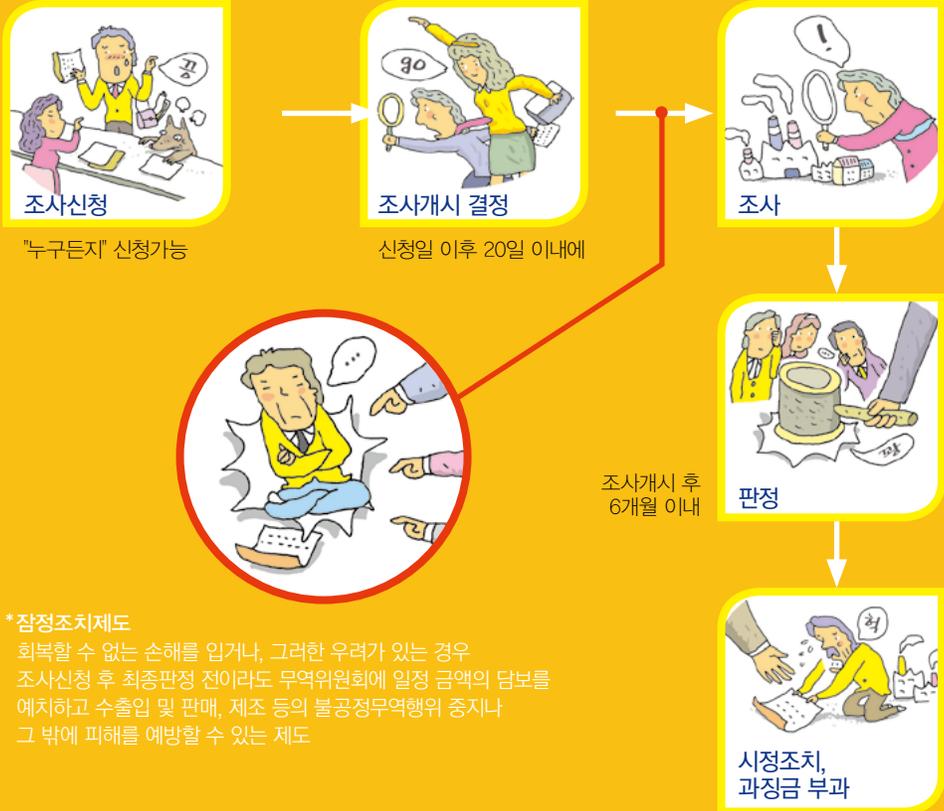
계약 미이행으로 수출입질서 저해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신용을 손상해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사 및 판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잠정조치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신청 후 최종판정 전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에 힘씁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시정조치

-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 당해 물품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 정정광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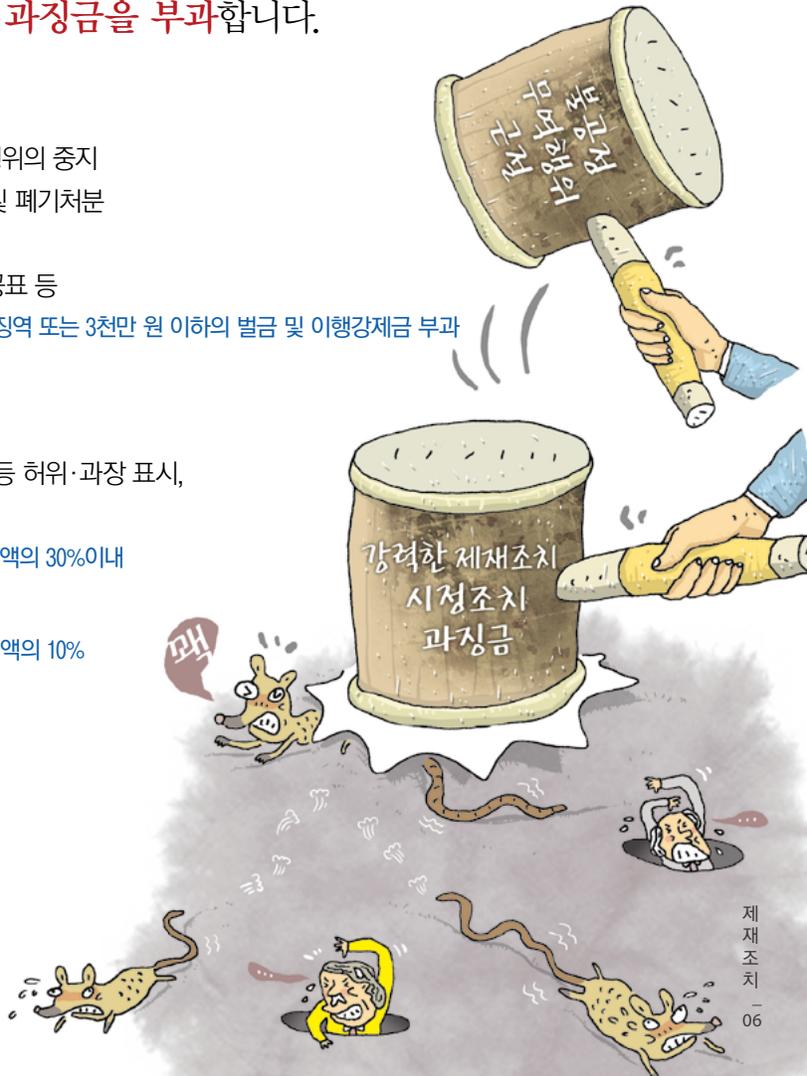
과징금

- 지식재산권 침해, 품질 등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최근 3년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이내

- 원산지표시 위반

*최근 5년간 수출입신고 금액의 10%
(3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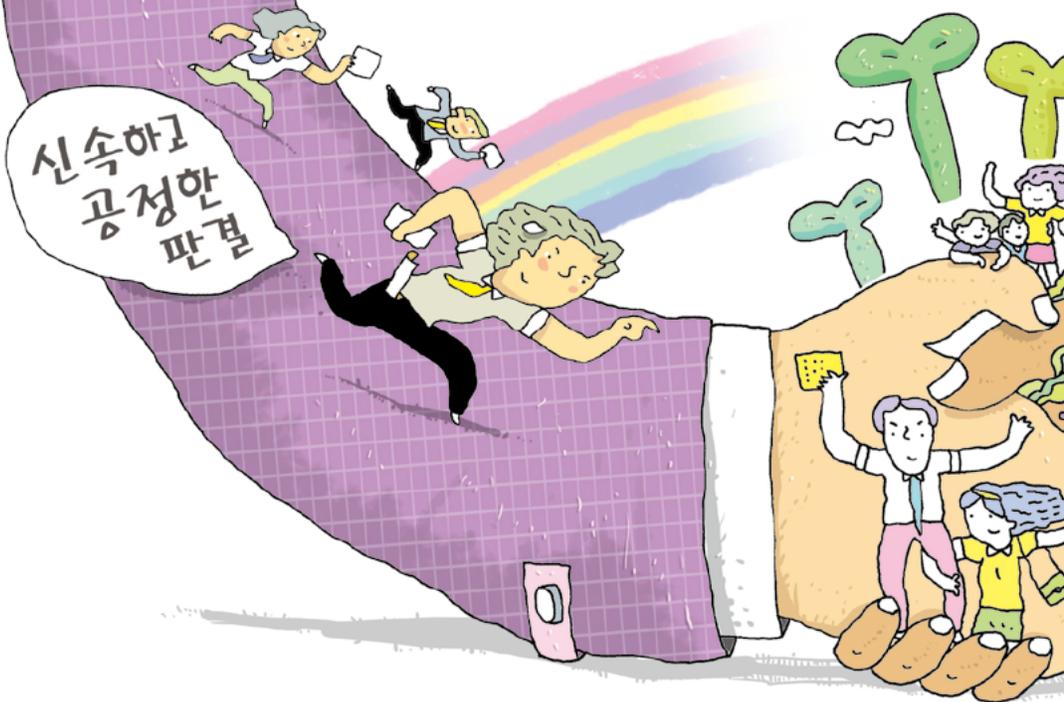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1. 신속한 조사절차

타 기관(법원, 특허심판원 등)과 비교할 때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하고, 잠정조치 제도 이용시
약 1~3개월 이내에 침해행위 중지가 가능합니다.

2. 넓은 보호 권리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도
저작권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합니다. (3쪽 *보호 권리 범위 참조)



3. 우회 수입 등 효과적인 차단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침해로 판정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타인에 의해서 수출입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판정 절차없이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통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4. 강력한 제재조치

타기관과 비교할 때 수입·수출·판매행위 중지 등 제재조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며 강력한 효력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조사 신청 시: 대리인 선임비용 50%까지 지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실 02)2124-3161



1987년 설립 이래 370여건의 사건처리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업체를 조사·처벌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물품 수입 업체

동박(전지박)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한 업체와 원권리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물품 수입업체

목욕의자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업체에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물품 수입업체

자석완구의 상표권·서비스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업체에 수입·판매행위 중지, 해외공급자에 침해물품 반입배제 명령 등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상표권 침해 물품 수입업체

의류 상표권을 침해한 업체에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저작권·상표권 침해 물품 수입업체

완구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업체에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영업비밀 침해 업체

교환렌즈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해외에 수출한 업체에 수출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수입업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사례)

중국산 유리거울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업체에 수입행위 중지, 원산지 정정표시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불공정무역행위의 근절 적발을 위해 19개 업종 단체에 지정·운영중이며
불공정무역행위 적발 및 피해 상담, 신고 1차 접수 등 업무 수행(12p 신고센터 연락처 참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조사신청 안내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지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한
서면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양식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k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에서의 상담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Korea Trade Commission

무역위원회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조사 신청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19개)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_ 02)3445-376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_ 02)2183-5886
- 한국의류산업협회 _ 02)528-0115
- 한국무역협회 _ 02)6000-5518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_ 02)422-6690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_ 02)369-7868
- 대한안경사협회 _ 02)756-1001
- 한국산업용재협회 _ 02)2275-4071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_ 02)784-4114
- 한국판유리창호협회 _ 02)3453-7991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_ 02)795-9505
- 한국베어링산업협회 _ 02)784-1705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_ 02)7725-6999
- 한국철강협회 _ 02)559-3546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_ 02)517-6450
- 한국완구협회 _ 031)348-8674
- 대한화장품협회 _ 02)785-7984
- 한국저작권보호원 _ 02)3153-2741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_ 02)6388-6009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7층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T 044)203-5881~9 F 044)203-4813 E utid@korea.kr
www.ktc.go.kr